

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741
----------	-----

2009. 4.24.
복지건설위원회

1. 제 안 자 : 윤 호 영 의원의 4인

2. 제정사유

-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원에서 헌혈권장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 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6조)

라.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자는 그 사업상 알게된 비밀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도록 의무 규정 (안 제8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이번에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권장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혈액수급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조례구성은

○ 제1조 목적에서 제9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주요제정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혈액의 원활한 수급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
-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헌혈권장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와 헌혈활동의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
- 안 제6조는 헌혈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규정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 지급에 관한 규정을
-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준수에 관한 내용을
- 안 제9조에서는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

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는 부칙 규정을 둬.

○ 본 조례 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였으며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구민의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제정 시행중에 있는 사례가 있으며,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함.

5. 관련법규

- 관계법령 :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